



제261회 임시회  
2007. 6. 12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 
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발 의 자 : 최광옥 의원외 7인

## □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7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07년 6월 5일

## □ 제안 이유

- 조례중 「위탁계약의 취소」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가. 위탁계약의 취소사유 구체적 명시 (안 제16조)

- “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”를 ⇒ “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”로 개정

나.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

- “체육청소년과장”을 ⇒ “충청북도지사”로 개정

## □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2006년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도에 대해 규제개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례안 제16조에서

규정한 조문 내용중 “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” 라  
규정한 내용이 자연학습원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써는 명확  
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 
보완하는 것이며,

-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(12.22)가  
개정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 
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 
개정 조례안 1부.